

(붙임3)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

제정 1984. 1.14. 고시 제84-7호

개정 1990. 3. 2. 고시 제90-19호

1996. 7.20. 고시 제96-55호

2013. 2.28. 고시 제2013-40호

2017.12.21. 고시 제2017-230호

구분 과목	인정과목	레지던트 수련인정 연한
내과	없음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 취득자	1년 인정
소아청소년과	내과, 응급의학과 전문의 자격 취득자	1년 인정
산부인과	없음	
정신건강의학과	없음	
정형외과	없음	
신경외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전문의 자격 취득자	1년 인정
흉부외과	외과 전문의 자격 취득자	1년 인정
성형외과	외과 전문의 자격 취득자	1년 인정
안과	없음	
이비인후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 취득자	1년 인정
피부과	없음	
비뇨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내과, 마취과 전문의 자격 취득자	1년 인정
영상의학과	핵의학과 전문의 자격 취득자	1년 인정
방사선종양학과	4년 과정의 타과(3년 과정의 결핵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 제외) 전문의 자격 취득자	1년 인정
마취통증의학과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의학과 전문의 자격 취득자 또는 수련이수자	1년 인정
신경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자격 취득자	1년 인정
재활의학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전문의 자격 취득자	1년 인정

과목 \ 구분	인정과목	레지던트 수련인정 연한
결핵과	1. 내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전문의 자격 취득자 2. 내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수련 이수자	1. 2년 인정 2. 1년 인정
진단검사의학과	없음	
병리과	없음	
예방의학과	타과 전문의 자격 취득자	1년 인정
가정의학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예방의학과 전문의 자격 취득자	1년 인정
응급의학과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비뇨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신경과 전문 의 자격 취득자	1년 인정
핵의학과	내과,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 취득자	1년 인정
직업환경의학과	타과 전문의 자격 취득자	1년 인정

- 주 1) 전문의 자격 취득자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 2) 수련 이수자 : 해당과의 전체 수련기간을 모두 이수하였으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
- 3) 레지던트 수련인정 연한 : 레지던트 수련의 최대 인정 기간을 의미하며, 2개과 이상의 자격이 있는 경우라도 각 과별로 정한 인정 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